



8.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

2000. 9. 1 제정
2004. 8. 10 개정
2005. 4. 15 개정
2011. 3. 1 개정
2016. 3. 1 개정

1.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2.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6. 기타 분과전문의 관련 규정

-
- 1)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관리 규정
 - 2) 기타 규정
 - 3) 별도 규정

수련내용

수련병원의 세부지정기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분과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 3조] 의의

분과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야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이 탁월함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 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 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4조] 조직

- ①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 하며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 ③ 위원의 구성: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일반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고시이사, 교육이사, 학술이사, 총무이사
 2. 일반직 위원: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2명 내외로 선임한다. 단, 선출된 위원은 반드시 학회 평의원이어야 한다.
 3. 간사: 위원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1명을 위원장이 간사로 선출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5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인정하는 관련 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 6조] 수 련

- ①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염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호-2에 해당하는 파견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조]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및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별도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 병원 지정을 추천 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 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④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는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조] 자격 인정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

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9조] 시 험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조]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

① 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매 5년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조] 자격증의 표방

자격증은 자격증 자체 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표방할 수 없다.

[제 12조] 보칙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정한다.

[제 13조] 자격 정지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회수하고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① 자격증 표방금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재평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경우.

③ 분과전문의의 직분을 훼손한 경우.

④ 학회 정회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정규수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④ 기타 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4.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 최근 5년 동안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지(국문 또는 영문 학술지)나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의학 잡지에 분과전문의에 관련된 내용의 원저 2편 이상을 주저자(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발표한 자.
 3. 동일한 논문은 한 명에 한해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며 같은 목적으로 2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4.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응시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전문 과목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 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 ⑩ 학술 업적: 논문 및 학회 발표 목록 및 증빙 자료
- ⑪ 학회 활동: 회비완납 증명서, 업무 위원회 활동 증명서 등

[제 6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조] 시험문제의 관리

- ① 출제와 시험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한 다음 위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1. 출제위원: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문제를 출제한다.
 2. 고시위원: 출제된 문제에서 당해 연도 문제를 선택하고, 시험감독 및 채점을 담당한다.
- ② 문제의 보관: 당해 연도 시험문제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 ③ 문제은행: 당해 연도에 출제된 문제는 시험 후 공개하며, 동시에 문제은행에 저장한다. 문제 은행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8조] 채점

- ① 채점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고시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 9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10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12조] 보칙

-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도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

- ①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 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5평점, 공저자인 경우는 3평점으로 계산하고, 종설 및 중례 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 ② 갱신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평점 취득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②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③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④ 논문목록 및 증빙서류

[제 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 대상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2년 까지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갱신 대상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3년까지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 8조] 보칙

-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